



요 약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있어서, 현행법상으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계약’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담보하는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사 계약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음. 규제의 대상이 되는 ‘소멸’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감독당국의 지침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예: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감액 등이 소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는 In-bound 유입 계약의 경우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규제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지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함)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이른바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¹⁾
- 이와 관련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계약의 범위, 소멸의 범위, 규제의 예외 사유 등이 문제 될 수 있음

○ 우선,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계약’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보험계약 사이에서의 승환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을 승환 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즉, ①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고, 또한 ②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여야 함²⁾
 - 이에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계약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에 따라 구분되거나,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각 보험계약의 종류³⁾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2)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3) ① 생명보험상품: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포함), ② 손해보험상품: 화재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 포함), 자동차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책임보험계약, 기술보험계약, 권리보험계약, 도난보험계약, 유리보험계약, 동물보험계약, 원자력보험계약, 비용보험계약, 낄씨보험계약, ③ 제3보험상품: 상해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간병보험계약

- 그런데 위와 같은 현행법상의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암보험과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보장하는 위험의 범위와 내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제3보험(질병보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 문언에 따르면 승환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에 불필요하게 새로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을 것임
- 뿐만 아니라 유사 계약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에는 비교 안내 등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수와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오히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을 효율적으로 비교하여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음
- 이에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 주거나, 실제 담보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사 계약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음
 - 예컨대, 협회의 보험상품 비교·공시에 있어서는 암보험, CI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⁵⁾ 이러한 구분 기준 등을 참고해볼 수도 있을 것임

○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서의 ‘소멸’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감독당국의 지침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음

-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여기서 ‘소멸’의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음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시키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것인데, 그 외에 청약 철회,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감액 등이 소멸에 포함되는지도 문제 될 수 있음
- 청약 철회의 경우에는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 대상인 소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있음⁶⁾
- 한편,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의 경우, 소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현장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에서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의 경우에는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확정적으로 부활할 수 없게 된 시점(실효된 날부터 3년)에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음⁷⁾
 - 그런데 과거 제재 사례를 보면,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비교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비교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서⁸⁾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건에 대해 비교 안내 등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해도 되는 것인지 혼선이 생길 수 있음

4) 6개월 이내 승환의 경우 부당 승환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 안내해야 함

5)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정보 시행세칙」;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상품비교·공시자료 시행세칙」

6)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80153)

7) 현장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2015. 7. 22); 다만 회신 당시의 표준약관상으로는 부활 청구 가능 시점이 실효된 날부터 2년이었음(2015년 12월 29일 표준약관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

8)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사례(2015. 1. 22)

- 감액의 경우에도 소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음
 - 현장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에서는, 감액은 보험가입금액을 줄여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액에 대해서까지 부당 승환계약으로 제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음⁹⁾
 - 그러나 최소한의 명목적 금액만 남기고 감액하는 경우에도 소멸과 유사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 이처럼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서 소멸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감독당국의 지침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In-bound 유입 계약)에는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현재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승환 규제의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는데,¹⁰⁾ 그 외에 홈쇼핑이나 광고 등을 보고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 In-bound 유입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 모집종사자의 유도에 의한 승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In-bound 유입 계약의 경우에도 비교 안내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¹¹⁾
 - 보험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해당 보험계약자가 기존의 유사한 보험계약이 유지 중인 상황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 가입 과정에서 기존의 유사한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 등을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임
-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는 모집종사자가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보험 가입이라는 점이 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¹²⁾

9) 현장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2015. 12. 23)

10)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단서

11) 현장건의 과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2016. 12. 30)

12) 이 문제는,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가 ① 모집종사자가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②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하게 유사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게 하려는 것인지와 관련됨. 즉, 감독당국은 ②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기존의 유사한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은 ①과 같이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②와 같이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법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